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합553685(본소), 2020가합596002(반소) 판결
[선급금 청구의 소 · 매매대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진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준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미화 297,000달러 및 그중 미화 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미화 100,000달러에 대하여는 2020. 4. 28.부터, 미화 147,000달러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나.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각 2020.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미화 1,782,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4. 10.경 ① 원고가 브라질에서 200컨테이너 분량의 닭발 5,400메가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피고의 중국 내 거래처에 공급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94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표시한다)를 지급하되 그중 30%를 선급하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2020. 4. 14. 50,000달러, 2020. 4. 28. 100,000달러, 2020. 5. 18. 147,000달러, 2020. 6. 25. 60,000,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지급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15컨테이너 물량의 브라질산 닭발을 선적하였다는 취지의 선하증권 사본과 선적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위 선적에 의한 물품은 1컨테이너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족발이었고, 닭발 1컨테이너 물량조차 피고가 지정한 중국 내 거래처가 아닌 불상의 업체가 찾아갔다.

2. 원고의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의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상 선급금으로 1,782,000달러(

= 5,940,000달러 × 30%)에서 이 사건 기지급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하 ‘이 사건 나머지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테스트 오더 약정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물품 중 10컨테이너 물량에 관한 테스트 오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약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나머지 물량에 관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나머지 선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5. 피고에게 테스트 오더가 약속대로 진행되었으니 나머지 물품도 진행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 내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안의 항변권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 제536조 제2항1), 제1항 본문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나머지 선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물품 선적에 관한 선하증권 원본의 발송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사본만 교부한 점, ② 원고가 교부한 사본의 선적내용과 실제 선적 내용이 다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 선금금의 20%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지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원고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상 선금금은 1,782,000달러에 이르는 거액인바, 원고는 위 돈만 지급받으면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교부한 선하증권에 따라 선적이 이루어진 물품이 이 사건 물품과 상이하고, 그것을 중국에서 누가 받아갔는지조차도 피고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나머지 선금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정변경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피고에게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서상 채무는 사회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하여,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0. 8. 27.자 준비서면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지급 선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의 채무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닭발을 피고가 지정한 중국 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위 계약서 기타조건에 의하면 위 채무 이행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선하증권 원본과 선적을 증명할 다른 증빙자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에 브라질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납품하는 국제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닭발은 1컨테이너 물량에 불과하고, 그마저 피고 지정의 중국 내 거래처에 공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향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계약서상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20. 8. 2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지급 선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20. 4. 14.부터,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20. 4. 28.부터, 147,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20. 5. 18.부터,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20. 6. 2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김진호, 판사 이지현

- 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